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 Q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측정대행의 범위?

서울에 소재한 환경영향 평가업체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질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 받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저희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업체에서 대기질, 소음진동 항목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한 사업자가 수질측정장비 및 별도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 수질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질항목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측정 및 시료분석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수록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회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 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준하는 기술능력,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 및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변경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중에 일부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치하여 신고시 원활한 오수처리 및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처리용량을 50톤 이상으로 설치 신고 하였으나 현재 오수 발생량이 50톤 미만으로 발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신고된 처리용량을 변경하고 싶은데 기존의 처리시설의 구조변경 없이 처리용량만 변경할 수 있는지요? 지자체에 신고된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이면서 실질적인 발생량(객관적인 자료 입증) 50톤 미만인 경우 2012년 부터 적용되는 수질강화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실제 오수발생량이 처리시설 용량보다 적은 경우, 처리시설을 그대로 둔 채 처리용량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이 때 건축물등에서 발생하는 실제 오수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2차 연소실 온도 측정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K TYPE 열전대를 사용하여 2차 연소실 온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잦은 파손으로 인한 교체로 유지 비용(약 900만원/연)이 높고 열전대 보호관의 재(ASH)쌓임의 정도와 길이, 측정 위치, 깊이 등에 따른 온도편차가 발생하여 2차 연소실 온도에 관련된 설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이를 개선하고자 소각시설의 초기 승온 시 2차 연소실 온도를 열전대로 측정하고 600도 이상 승온 후 정상운전 시에는 적외선 온도계 사용(600도 이상시 열전대 사용 안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차 연소실 온도를 측정,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열전대와 적외선 온도계 모두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성적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할 적외선 온도계는 열전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소각로 전용 적외선 온도계로 3년의 연구 개발과 1년간의 실 소각로 적용시험이 완료된 제품으로 특허출원중 입니다.

**A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각시설의 연소실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하수재이용 시설 설치시 결합잔류염소 필요여부?**

당사는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계획된 처리공정은 하수처리수를 오존 처리하여 2009년 9월 개정된 하수처리수 재이용가이드 북의 수질권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용도는 도시재이용수) 도시재이용수의 경우 결합잔류염소를 0.2pp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존으로 살균처리한 처리수를 재차 염소투입장치를 사용하여 소독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1.6.9)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

별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이용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염소투입 장치를 사용한 소독 실시로 결합잔류염소 0.2mg/L 이상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본적처리증명 미신고대상 사업장의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인 폐산이 5년에 4톤 정도 일시 발생할 경우 발생량은 5년을 월평균한 66kg/월을 평균발생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발생년도 1년을 월평균한 333kg/월을 평균 발생량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지정폐기물이 배출량 이하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기본적처리증명을 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할 경우 배출·운반·처리자의 삼자계약서와 성분분석서, 처리인계서 등 처리근거서 등을 구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리인계서는 소량배출자용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등록이 따로 있는지요? 소량 배출자용 인계서를 등록 하려면 환경청에 관련서류접수 후 신고필증을 받아 등록을 하는지? 구청에 배출자 신고 후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등록이 가능한지요?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폐산이 월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 월 평균 배출량의 산정은 실제 발생하는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동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중 3일 동안 폐유가 600kg 발생한다면, 일 평균 배출량은 200kg이며, 월 평균 배출량은 600kg이 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폐산)이 폐기물처리계획 확인대상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3차 계약(배출-운반-처리)을 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없이 자체적으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